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용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3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용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2
IV. 참고자료	6
1.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부금 현황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5.
3. 회부연월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운영 형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기업의 지원이 위축되었음. 반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용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대기업 등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u>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1. 공공기관</u> <u>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u> <u>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u> <u>·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u>

②・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u>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u>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u>」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5조²⁾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³⁾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²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²⁵⁾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임.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전담체계의 한 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원의 법률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대기업의 지원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창업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기업의 기부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법률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기업 등이 부정한 청탁 없이 법령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지원이 지속될 필요성과 관련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 6788-5459

IV. 참고자료

1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부금 현황

□ 파트너 대기업 기부금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A社	-	10	-	-	-
B社	15	-	15	-	-
C社	-	-	-	1.2	1.5
D社	-	-	-	1.3	-
E社	5	5		-	-
F社	6.2	6.2	-	-	-
G社	-	-	-	-	-
H社	0.8	1	2.5	2.6	-
I社	2	1	1	-	1
J社	-	-	-	-	-
K社	3	3	3	3	5
L社	-	-	-	0.5	0.5
M社	-	-	-	-	-
N社	4.5	-	4.2	2.5	0.8
O社	0.5	-	-	-	-
P社	20.7	19.9	19.9	10	10
Q社	5	5	5	4.5	4.5
계	62.7	51.1	50.6	25.6	2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